

국토안전관리원 해체계획서 검토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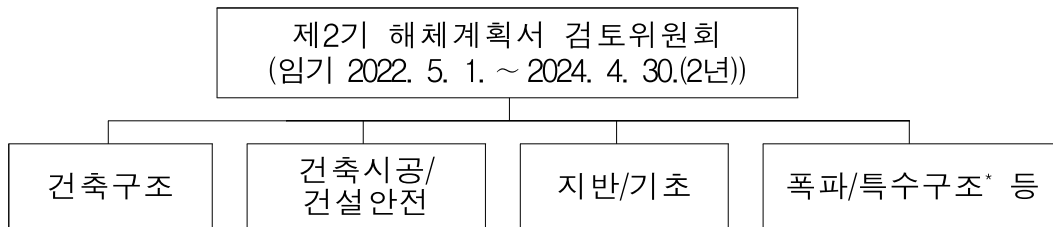
(건축물관리센터, '22.3.15.)

□ 목적

- 「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5항」에 근거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업무 수행('20.5)
- 상기 관련하여 국토안전관리원 「건축물의 해체계획서 검토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에 따라 해체계획서 검토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

□ 해체계획서 검토위원회 구성

- 검토위원회 구성 계획
 - 검토위원 구성 : 80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
 - 분과구성 : 4개분과



- *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: 기둥경간 20m이상, PEB구조, 스페이스프레임, 막구조, 케이블구조, 부유식구조,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전이보, 면진·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등

□ 자격요건

- 대학 또는 대학교의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서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관련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서, 박사학위가 있는 자
- 「기술사법 시행령」 별표 2의 2에 따른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관련분야 특급기술자
- 기타 위원장이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